

감 사 보 고 서

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귀중

본 감사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(이하 '협회'라 함) 「정관」 제55조 (회계의 처리)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공익목적사업 (구호회계, 위탁물품회계, 배분회계)와 기타사업(회관관리회계)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협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.

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협회의 운영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기록되었으며, 상기 공익목적사업 및 기타사업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3년 2월 21일 ~

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

감사 서 동



감사 허 승

